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1.1조
자유무역지대의 설립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한다.

제1.2조
일반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이 협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반덤핑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협정이란 한국-말레이시아 자유무역 협정을 말한다.

적용대상투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후 설립, 인수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로서, 제11.1조(정의)에 정의 된 것을 말한다.

관세 당국이란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운영과 집행을 담당하는 당국을 말한다.

- 가.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관세청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 왕립 관세청 또는 그 승계기관

관세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는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 그리고 부과금(종류를 불문한다)을 말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가.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7장(무역구제)에 합치하는 조치의 결과로 징수된 추가 관세, 또는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수수료 또는 모든 부과금

관세평가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모든 회사, 신탁, 파트너십, 합작투자, 단독소유기업,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 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기준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금융서비스란 GATS 금융서비스 부속서 제5항가호에 언급된 활동을 포함하여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이 국제통화기금협정 및 그 개정에 따라 결정한 “자유사용가능통화”를 말한다.

GATS란 WTO 협정 부속서 1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정부조달이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을 획득하거나 그 사용을 확보하는 과정을 말하고,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세계관세기구가 채택 및 운영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부속서 및 그 개정에 규정되며, 양 당사국이 각국의 법에서 채택 및 시행할 수 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말하고,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류의 주, 그리고 소호의 주를 포함한다.

수입허가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제18.1조(공동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조치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조치의 형태이거나 그 밖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개정되는 바에 따른 「국적법」상 의미에서 한국의 국민, 그리고

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 법에 따른 시민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당사국의 국민을 말한다.

원산지 상품이란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춘 상품을 말한다.

부폐성 상품이란 특히 적절한 보관 조건이 없는 경우 그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급속히 부

패하는 상품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이란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선적 전 검사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표는 서면 공표 또는 인터넷상에서의 공표를 포함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 및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 지역, 그리고

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가 주권을 갖는 자국의 영토, 내수 및 영해, 영해의 해저 및 하층토, 그리고 그러한 영역 위의 상공과 더불어, 국제법에 따라, 해저 및 하층토 그리고 그 해저 및 하층토의 상부 수역뿐만 아니라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에 관하여 말레이시아가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역으로 자국법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향후 지정될 수 있는 영해 밖에 위치한 모든 해양지역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의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를 말한다.

WTO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WTO 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마라케쉬에서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

제1.3조 목적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양 당사국 간 경제, 무역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하고 제고하는 것
- 나. 특히 양 당사국 간의 실질적인 모든 상품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점진적인 철폐를 통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고 촉진하는 것
- 다. 양 당사국 간 서비스 무역에 관한 제한 및 차별적 조치를 실질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분야별 적용범위를 가진 양 당사국 간 서비스 무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는 것
- 라. 투자 기회 그리고 양 당사국 간 투자의 증진, 보호, 촉진 및 자유화를 제고할 자유롭고 촉진적이며 경쟁력 있는 투자 환경을 양 당사국에 조성하는 것
- 마. 새로운 분야를 모색하고 더욱 긴밀한 경제 협력 및 통합을 위한 적절한 조치

를 개발하는 것

- 바. 양 당사국의 더욱 효과적인 경제 통합을 촉진하고 양 당사국 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는 것
- 사. 이 협정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과 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틀을 수립하는 것
- 아. 소상공인 · 중소기업을 특별히 고려하면서, 양 당사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 자. 상호 관심 분야에서 규제 관행을 공유하고 혁신을 증진함으로써 양 당사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조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